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278호

##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

확 정 일 : 2025년 12월 23일

시 행 일 : 2025년 12월 24일

#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위원장을 부사장으로 격상함에 따라 위원장과 운영부서장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 명확화 등을 통해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가부동수 처리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나. 부결 안건 경영심의회 부의 불가(안 제9조)

다. 위원장 및 운영부서장 역할 구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라. 지역위 위임사항 삭제(안 제8조)

#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설치 및 구성)

- ④ 위원장은 경영투자심사위원회 각 분과의 운영부서장으로 투자심사분과는 사업심의부서장이, 경영심사분과는 기획조정부서장이 되며 각각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주요투자의사 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 ⑤ 운영부서장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 ⑦ 운영부서장은 간사를 임명하여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안 및 소집) ① 제안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장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운영부서장은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에 운영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운영부서장은 부의된 안건 중 사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심의권한의 위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운영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심의·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경영심의회 부의) 제안부서장은 심의안건이 「경영심의회 운영규  
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경영심  
의회에 부의(부결된 안건 제외)하여야 한다. 이 때 부의대상은 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반영) 운영부서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  
에 대해 그 결과를 제안부서장 및 관할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안  
부서장 또는 관할부서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안  
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2025. 12. 23)

이 시행세칙은 2025. 12. 24.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제2조(설치 및 구성)</p> <p>④ 위원장은 투자심사분과는 사업심의부서장이, 경영심사분과는 기획조정부서장이 되며 각각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주요투자의사 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부사장으로 할 수 있다.</p> <p>⑤ <u>위원장</u>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p> <p>⑦ <u>위원장</u>은 간사를 임명하여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2조(설치 및 구성)</p> <p>④ 위원장은 <u>경영투자심사위원회</u> 각 분과의 <u>운영부서장</u>으로 투자심사분과는 사업심의부서장이, 경영심사분과는 기획조정부서장이 되며 각각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주요투자의사 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부사장으로 할 수 있다.</p> <p>⑤ <u>운영부서장</u>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p> <p>⑦ <u>운영부서장</u>은 간사를 임명하여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위원장 및 운영부서장 역할 구분</p> <p>위원장 및 운영부서장 역할 구분</p> <p>위원장 및 운영부서장 역할 구분</p>
<p>제4조(제안 및 소집) ① 제안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u>위원장</u>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4조(제안 및 소집) ① 제안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u>운영부서장</u>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위원장 및 운영부서장 역할 구분</p>

현행	개정안	사유
<p>② <u>위원장은</u>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에 <u>위원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u>운영부서장은</u>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에 <u>운영부서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위원장 및 운영부서장 역할 구분</p>
<p>제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u></p>	<p>가부동수 처리 명확화</p>
<p>③ <u>위원장은</u> 부의된 안건 중 사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u>운영부서장은</u> 부의된 안건 중 사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p>	<p>위원장 및 운영부서장 역할 구분</p>
<p>제8조(심의권한의 위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u>위원장이</u> 인정하는 경우 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u>실무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u> 심의·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8조(심의권한의 위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u>운영부서장이</u> 인정하는 경우 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u>실무위원회에</u> 심의·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p>위원장 및 운영부서장 역할 구분  지역위원회 위임사항 삭제</p>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제9조(경영심의회 부의) 제안  부서장은 심의안건이 「경영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경영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 때 부의대상은 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p>	<p>제9조(경영심의회 부의) 제안  부서장은 심의안건이 「경영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경영심의회에 부의(<u>부결된 안건 제외</u>)하여야 한다. 이 때 부의대상은 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p>	<p>부결 안건  경영심의회  부의 불가</p>
<p>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반영) <u>위원장</u>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제안부서장 및 관할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안부서장 또는 관할부서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안건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반영) <u>운영부서장</u>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제안부서장 및 관할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안부서장 또는 관할부서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안건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위원장 및  운영부서장  역할 구분</p>

#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

제정 2009.10. 1 시행세칙 제3호  
개정 2009.10.28 시행세칙 제23호  
개정 2011.4.21 시행세칙 제49호  
개정 2015.7.13 시행세칙 제119호  
개정 2016.6.24. 시행세칙 제140호  
개정 2024.10.30. 시행세칙 제257호  
개정 2025.12.23. 시행세칙 제278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경영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영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공사 경영 및 투자와 관련한 주요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경영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심사분과 : 사업비 예산을 수반하는 토지·주택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검토 및 투자여부 결정, 설계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결정
2. 경영심사분과 : 전사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계획의 수립 및 기타 중요 방침과 관련하여, 경영심의회 부의 전 안건의 타당성을 검토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영투자심사위원회 각 분과의 운영부서장으로 투자심사분과는 사업심의부서장이, 경영심사분과는 기획조정부서장이 되며 각각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주요투자 의사 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부사장으로 할 수 있다.

⑤ 운영부서장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⑥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다음 순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부서장은 간사를 임명하여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사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후보지 선정, 개발계획(안) 수립, 주택사업계획(안) 수립 및 사업착수 등 투자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사업비 증가 등 주요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구체적 사업참여 의향이 포함된 각종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4. 주요 설계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5.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사채의 발행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7. 중요방침 및 업무처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8. 경영의사 결정이 필요한 현안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안 및 소집) ① 제안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장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장은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에 운영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의결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표결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표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장은 부의된 안건 중 사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거나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 중 중대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심의의 보류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부의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팀(부)장급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지역본부·사업본부 및 직할사업단(이하 '지역본부'라 한다) 내 주요 현안사항의 조정 및 투자의사에 대한 자체 검토·심사를 위해 지역본부 팀(부)장급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

제8조(심의권한의 위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운영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심의·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경영심의회 부의) 제안부서장은 심의안건이 「경영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경영심의회에 부의(부결된 안건 제외)하여야 한다. 이 때 부의대상은 사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반영) 운영부서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제안부서장 및 관할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안부서장 또는 관할부서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안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협의 등) ①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초 계획부터 사업 준공시까지의 사업추진단계에서 주요의사결정 등의 방침수립부서는 사업협의를 이행한다.

② 사업심의부서장은 사업착수 결정 후 진행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심의부서장은 사업성 악화 및 장기 현안보유 등 집중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지구를 중점관리지구로 선정하여 개선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침) 이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업협의 및 중간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2011.4.2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1일 이전 후보지 선정 또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거나, 보상계획 공고가 실시된 사업은 해당 절차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초 의사결정 시에 비해 대규모 사업비 증가 또는 수익감소, 적자전환 등이 발생하여 사업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토록 할 수 있다.

#### 부칙<2015.7.1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06.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